산업보건 주요 뉴스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관련 지침 개정 시행

6월 말까지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

고용노동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지난 5월 22일부터 개정·시행하고 있다.

개정 고시는 중소규모 사업장 스스로가 사업장 위험을 찾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법·핵심요인 기술법 등의 위험성평가 방법을 담고 있다. 한편, 정기·수시 평가 대신 월·주·일 단위의 구체적 안전관리 활동을 제시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되었으며, 노동자를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공유해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시 시행에 맞춰 모든 사업장이 원활하게 위험성평가를 도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도 발간하였다. 안전보건공단은 기존의 온라인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에 이번에 추가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개선하였다.

고용노동부는 6월말까지를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으로 정하고,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및 사례집을 추가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시작으로 6월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신청을 받아 사업장 안전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UCC 공모전도 실시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밀폐공간 질식재해 발생위험 경보 발령

6월 15일까지 자율개선 기간, 8월까지 집중감독 실시

지난 5월 15(월)일 오수관 준설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최근 10년간 재해자(362명)의 절반(154명)이 사망해, 반드시 출입 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때 이른 더위로 오폐수처리 시설 등 밀폐공간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밀폐작업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고 8월까지 집중감독한다고 밝혔다.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 작업에서 황화수소 발생, 각종 관수로, 맨홀·집수정·탱크 내부 작업 시 황화수소 또는 산소결핍 발생,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는 배관, 탱크 용접작업 시 산소결핍,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양수기 가동 시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 등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①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근로자가 잘 알도록 작업 전에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 ②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개시하도록 해야 한다. ③노동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6월 15일까지 기업에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 중 고위험사업장을 선정하여 8월까지 집중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1644-8595 또는 온라인 신청) 및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교육(자격)과정을 운영해 사업장의 자체 개선을 지원한다.